

개발행위허가제한(연장) 및 지형도면 고시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왕 장안지구 및 의왕 ICD주변지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제한 (연장) 사항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1. 3. 17.  
의 왕 시 장

1. 개발행위허가제한(연장) 지역

가. 의왕 장안지구

- 위 치 : 의왕시 삼동 71번지 일원
- 면 적 : 256,202㎡

나. 의왕 ICD주변지구

- 위 치 : 의왕시 이동 582번지 일원
- 면 적 : 201,314㎡

2. 개발행위허가제한(연장) 사유 :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·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연장(2년)하고자 함.

3. 개발행위허가제한 대상행위

가. 개발행위허가제한 대상

- (1)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(용도변경 포함)
- (2) 토지의 형질변경(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영농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제외)
- (3) 죽목의 벌채 및 식재
- (4) 토석채취
- (5) 토지의 분할

(공공목적에 위한 분할 또는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외)

- (6)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
- (7) 그 밖에 제(1)호 내지 제(6)호와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

행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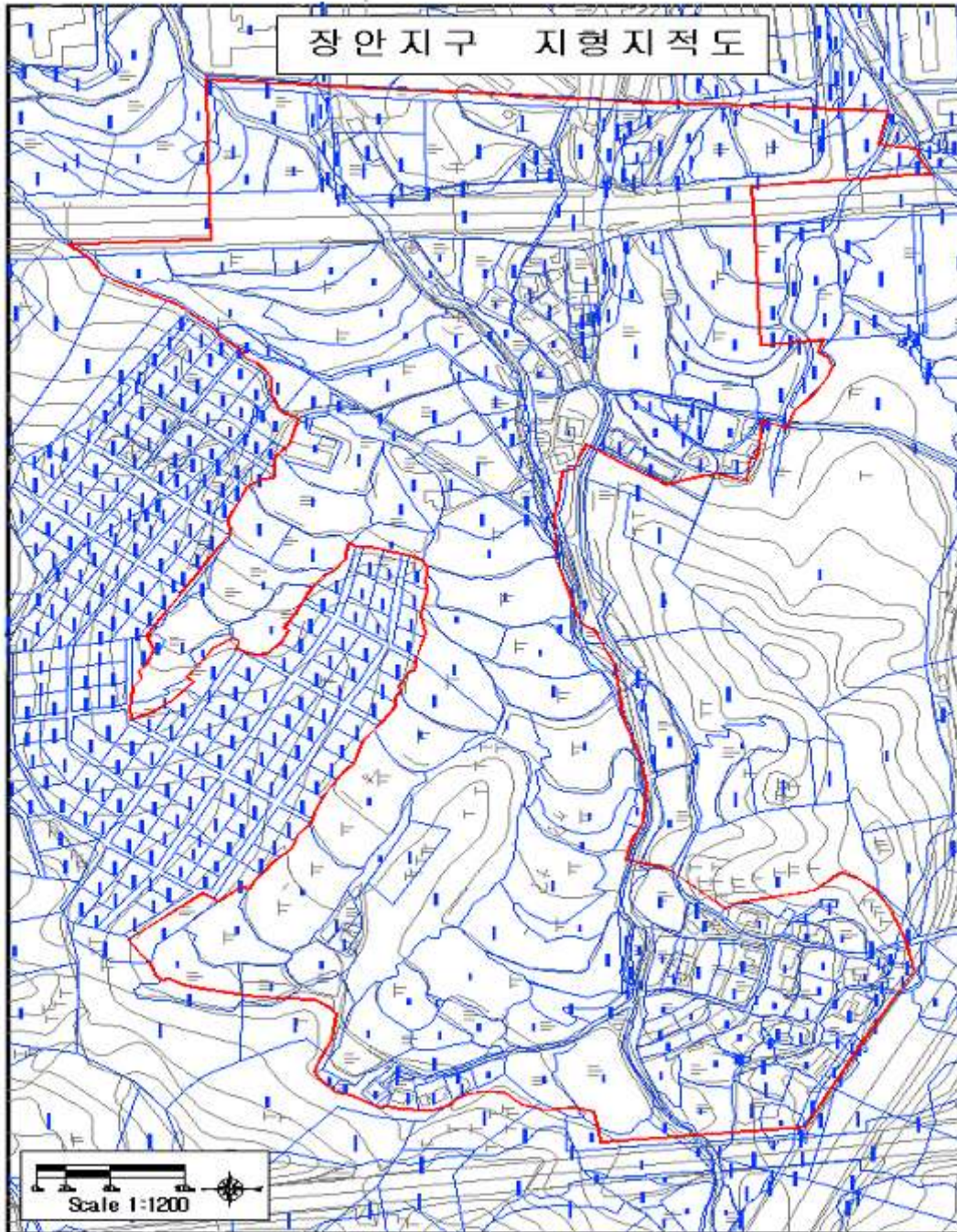
나. 제한 제외대상

- (1) 국가 또는 시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개발행위로서 도시관리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
- (1) 허가된 개발행위 중에서 면적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변경행위
- (1) 제한고시 이전에 개발행위 등이 신청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

4. 개발행위허가제한(연장) 기간 : 고시일로부터 2년

5. 지형지적도 : 붙임

□ 의왕 장안지구 지형지적도



□ 의왕 ICD주변지구 지형지적도

